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기상여건으로 인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화 등 >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3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및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5
2. 기상여건등을 사업주의 의무 사유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유로 규정	12
3. 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 조치 명령 및 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신설	17
4.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 지원 근거 마련	25
5.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소방관서 신고 의무	27
6. 작업중지·대피 관련 사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규정 등	31

I. 제안경위

2024년 9월 4일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4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후위기로 해마다 폭염 등 기상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폭염 속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비통 속에 장례를 치르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대상에 폭염·한파 등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있어, 기상여건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21대 국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

한편, 법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노동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권고 수준에 그쳐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가 국민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

의 기본권임. 산업현장의 편리와 효율, 영세사업장에 대한 너그러움과 온정주의가 약자인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는 결코 안 됨.

이에 기상여건 및 고열·한랭·다습한 상태 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작업중지권의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을 추가하며, 현재 5인 미만 사업장도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의 대상에 기상여건등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를 추가하고,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 및 작업중지를 직접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를 통해 예방하여야 하는 건강장해의 종류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의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한 상태(이하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함(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다. 사업주가 냉난방장치 설치 등 기상여건등에 관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곧바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

거나(안 제52조의2제1항), 또는 사업주에게 먼저 각종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도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라. 사업주에 의한 작업중지·대피 조치 요건에 기상여건등에 의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을 추가함(안 제51조).

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요건에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위험의 존부가 불확실한 때에는 근로자가 판단하게 함(안 제52조제1항 전단).

바.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때에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그 작업중지·대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후단).

사. 작업중지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안 제53조의3).

아.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기상여건등에 노출되어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타 근로자를 발견하면 사업주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사업주가 119구급대 등 소방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3조의4 및 제175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자.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에 관계없이 유해·위험작업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에 폭염·고열을 비롯한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29조제3항).

차.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에 작업중지·대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안 제15조제1항).

카.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작업중지·대피의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고,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반드시 협의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조치 의무 및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폭염·한파 등의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보건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9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폭염·한파·폭우·폭설·태풍·황사·미세먼지 등 기상여건 또는 고열·한랭·다습 등의 상태(이하 “기상여건 등”이라 한다)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u>

② (생략) <신설>	<u>장해</u>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보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39조제1항1)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제167조제1항, 제168조제1호2)).

-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2)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폭염 및 한파 등 기상여건에서 장시간 작업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보건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열악한 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①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와 ‘고열·한랭’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³⁾ ②고열·한랭·다습은 인위적으로 온도나 습도가 조절된 의미로 폭염과 한파와 같은 자연현상인 기상여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③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의무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④「2025년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3)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0522호)」 2024년 10월 22일 개정, 2025년 6월 1일 시행
-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흙(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열·한랭**·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에는 온열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내 작업 사업장에 실내 작업장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폭염 재난 예방 대책 설비 및 시설 구입 비용을 지원하며, 10,000개의 사업장에 온열질환 응급 키트(Kit)를⁴⁾ 지원하는 계획액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⁵⁾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온·습도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55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열”이란 열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를 말한다.
2. “한랭”이란 냉각원(冷却源)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차가운 온도를 말한다.
3. “다습”이란 습기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피부질환 등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습한 상태를 말한다.

제559조(고열작업 등) ① “고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용광로, 평로(平爐), 전로 또는 전기로에 의하여 광물이나 금속을 제련하거나 정련하는 장소
2. 용선로(鎔船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용해하는 장소
3. 가열로(加熱爐) 등으로 광물·금속 또는 유리를 가열하는 장소
4. 도자기나 기와 등을 소성(燒成)하는 장소
5. 광물을 배소(焙燒) 또는 소결(燒結)하는 장소
6. 가열된 금속을 운반·압연 또는 가공하는 장소
7. 녹인 금속을 운반하거나 주입하는 장소
8. 녹인 유리로 유리제품을 성형하는 장소
9. 고무에 황을 넣어 열처리하는 장소

4) 구성품 예시 : 쿨매트, 쿨링액, 머리 냉찜질 세트, 식염포도당 등

5) 클린사업장조성지원(4151-350) > 건강일터 조성지원
(「2025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운용계획안」, p.310, 324-326)

10. 열원을 사용하여 물건 등을 건조시키는 장소

11. 갱내에서 고열이 발생하는 장소

12. 가열된 노(爐)를 수리하는 장소

1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② “한랭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액체공기·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장소

2. 냉장고·제빙고·저빙고 또는 냉동고 등의 내부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③ “다습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1.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염색조로 염색하는 장소

2.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금속·비금속을 세척하거나 도금하는 장소

3. 방적 또는 직포(織布) 공정에서 가습하는 장소

4. 다량의 증기를 사용하여 가죽을 탈지(脫脂)하는 장소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소

제560조(온도·습도 조절) ① 사업주는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온도·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여 별도의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외부의 대기온도보다 현저히 낮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냉방장치를 가동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근로자에게 보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1조(환기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실내에서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환기장치 설치, 열원과의 격리, 복사열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2조(고열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작업을 하는 경우에 열경련·열탈진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새로 배치할 경우에는 고열에 순응할 때까지 고열작업시간을 매일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근로자가 온도·습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의 기기를 작업장소에 상시 갖추어 둘 것

제563조(한랭장해 예방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한랭작업을 하는 경우에 동상 등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동지도를 할 것

2. 적절한 지방과 비타민 섭취를 위한 영양지도를 할 것
3. 체온 유지를 위하여 더운물을 준비할 것
4. 젖은 작업복 등은 즉시 갈아입도록 할 것

제564조(다습장애 예방 조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습기 제거를 위하여 환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업의 성질상 습기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 다습으로 인한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실내에서 다습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독하거나 청소하는 등 미생물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6조(휴식 등)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
2.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열사병 등의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깨끗한 음료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 및 “고열·한랭”을 보건조치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미 지난 10월 22일 개정된 내용이고, “폭우·폭설·태풍”은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곤란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구체적 위험(추락·깔림·협착·붕괴 등)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는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다습·황사·미세먼지”는 이미 현행법상 보건조치 의무대상이므로 개정 실익이 적고, 사업주의 보건조치는 산안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 발생은 국가의 귀책 사유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이행의 경우와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곤란하여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기상여건등을 사업주의 의무 사유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유로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면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작업 중지 및 대피가 근로자가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및 제5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u>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u> ----- -----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u>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② (생략) ③ (생략) ④ 사업주는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u>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u> ----- -----. <u>이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 <u>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또는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u>----- ----- -----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상 ‘사업주의 작업중지’는 두 가지 유형으로 ①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⁶⁾와 ②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⁷⁾로서 작업중지가 있음⁷⁾.

또한,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근로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기상여건등으로 인한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면서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각각 작업중지권과 작업중지 조치 권한을 부여하며, 근

6)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두텁게 보호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음.

다만, ①‘급박한 위험’은 객관적으로 보아 산업재해의 위험이 곧 발생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어 즉시 대피하지 아니하면 작업중인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에⁸⁾ 현행법 제38조의 안전조치 및 제39조의 보건조치 사항 등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⁹⁾ 포괄하는 개념이고,

②‘기상여건등’의 경우만 ‘급박한 위험’에서 ‘위험’으로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주에게 과도한 작업중지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범위의 과도한 확장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있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주관적 판단을 요건으로 규정할 경우 개념의 광범위성, 불명확성으로 인한 현장 갈등 요인으로 작용 우려가 있고, 주요 외국의 입법례도 “급박한 위험(ILO)”,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즉각적이거나 심각한 위험(캐나다)” 등으로 규정하고,

③작업중지는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업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 및 생산활동을 멈추는 것이므로 현행법 제52조제1항에서는 급박한 위험을 가장 잘 아

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8878 판결

9) 기계·기구 그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등

는 직접 당사자인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정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작업 및 생산활동을 멈추는 작업중지의 취지에 맞지 않아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및 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여건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기상여건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신설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2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② (생략)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 하여 필요한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u><후단 신설></u>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② (생략) ③ ----- ----- ----- <u>지체 없이</u> <u>하고, 그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u> <u>장관에게 보고하여야</u> ----. <u>이</u> <u>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조치의</u> <u>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u> <u>우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u> <u>제53조의2에 따른 기상여건등 시</u> <u>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신 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 ⑤ (생략)

<신 설>

제52조의2(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상여건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그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으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기계·설비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기상여건등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기상여건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냉난방 등을 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충분한 온도·습도 조절장치의 설치·가동, 휴게시간의 조정 및 휴게공간 설치, 기상여건 등에 노출된 근로자에 대한 건강 점검,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기상여건등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기상여건등 시정조치 명령의 게시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 중지명령 등에 관하여는 제53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계·설비등”은 “기상여건등”으로,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은 “기상여건등 하에서 수행되는 작업”으로 본다.

제168조(벌칙) -----

-----.

1 -----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52조의2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

- 2 ----- 제53조의2제2항 및 제166조의2-----

제169조(벌칙) -----

-----.

1. (현행과 같음)

- 2 -----
- 제53조의2제

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이 규정하는 ‘정부의 명령에 의한 작업중지는 ①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를 미이행하여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제53조)와 ②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는 작업중지(제55조)’¹⁰⁾가 있음.¹¹⁾

10)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건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1)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

개정안은 기상여건으로 인한 작업장 안전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사업주의 조치에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명령함으로써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작업중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①현행법상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대피하고, 이를 보고 받은 관리감독자등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하여 사업장 내에서 발견한 유해·위험 요인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령하여 개입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취지와 서로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②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작업중지명령이 사유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 개정안은 현행법 제3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으로도 그 취지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¹²⁾를 고려하여 논할 필요가 있으며,

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의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장관을 처벌하도록 하고(제169조), 준용규정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제168조) 등 내용과 체계가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근로자 작업중지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 명령을 규정한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작업중지가 활성화 되는 상황에서¹³⁾ 개정안에 따라 관리감독자들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정조치 등을 명령하면 근로자 작업중지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개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근로자 작업중지 활용이 저해되는 등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관리감독자들의 조치사항 보고만으로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의 구체적 원인, 사업장의 작업환경 등을 알 수 없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주 조치에 대한 적정성 검토 및 적절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수많은 작업중지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의 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어렵다고 하였음.

②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신설한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019년 1월 15일 개정, 2020년 1월 16일 시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는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12)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가12

13) 삼성물산의 경우, '21.3월~'23.4월 근로자작업중지 5만3천여건 실시

위한 즉시강제로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필요 최소 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현행법 제55조)에만 한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해야 하며, 개정안의 경우 작업중지 요건을 급박한 위험이 아닌 ‘기상여건등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사망·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로 확대하였는데 개념의 광범위성, 불명확성으로 인해 작업중지 명령에 대한 판단이 더욱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정부가 온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작업중지 명령하는 것을 제도화한 해외사례는 중동의 카타르가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함.

기상여건등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 신설한 개정안은 지난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위반 시 적극적 시정지시와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와 별개로 시정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감소분 지원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 작업중지권 사용,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이행,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사업주 이행에 따른 근로자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u>제53조의3(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보전) ① 국가는 제51조·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 또는 제52조의2부터 제53조의2까지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임금 감소분 지원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나. 검토의견

현행법에서는 사업주, 근로자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제적 손실 또는 근로자의 임금 손실 발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사업주로서는 작업중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손실 발생의 우려로 인해 작업중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개정안은 작업중지로 인한 기업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작업중지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손실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워 예산으로 보존은 곤란하고, 태풍 등 기타 자연재난이나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여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 및 소방관서 신고 의무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이하 “요구조 근로자”라 한다)를 발견하면 즉시 사업주나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안 제53조의4 신설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3조의4(산업재해 등의 발생 신고) ①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나 기상여건등으로 인하여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이하 “요구조 근로자”라 한다)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할 소방관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2. (생략) ③ ~ ⑦ (생략)	<u>② 사업주는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이미 소방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53조의4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요구조 근로자의 발생사실을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u> 2.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요구조 근로자를 발견한 즉시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따른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대부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수되어야 할 기준이나 실시되어야 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에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등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수단을 마련하여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서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

다만,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으로 산재 발생 사실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보고의무를 법에 규정할 실익이 적고, 근로자가 대피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등 불이익 조치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며, 관리감독자들에게 산재 발생 시 소방관서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소방기본법」에서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리도록 규정한 것과¹⁴⁾ 중복되어,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입법하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재의 원인과 경중, 근로자의 증상,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방관서 신고로만 한정하면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본질적인 조치에

14)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집중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에 산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은, 법에서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사업장 규모, 작업장소 등 그 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의견도 참
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작업중지·대피 관련 사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에 업중지·대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작업중지·대피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대표와 그 내용을 협의하도록 하며,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추가 실시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u><신설></u>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u>3의2. 제51조에 따른 작업중지·대피 조치 및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에 관한 사항</u>
4. ~ 9. (생략)	4. ~ 9. (현행과 같음)

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¹⁵⁾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

15)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업종, 기계설비, 생산공정 등의 실태에 적응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규정하고,¹⁶⁾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도록 하며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¹⁷⁾

개정안은 현행법상 사용자 및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에 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로 명시하여, 작업중지 및 대피가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대피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와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16)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7)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 등의 근로자 보호 의무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작업중지 및 대피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며 사업장의 현실에 맞는 작업중지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고용노동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토록 하고,¹⁸⁾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여 개정안과 같이 별도로 작업중지·대피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위 규정과 중복된 내용으로, 개정 실익이 없음.

둘째, 현행 법령에서 이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¹⁹⁾ 개정안은 중복된 내용으로, 개정 실익이 없음.

셋째, 현행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정안의 근로자와의 협의는 현행법보다 낮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고, 협의해야

18)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9) 시행규칙 별표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

4. 작업장 안전관리 - 바.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가능특별교육의 대상이 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여 39개의 작업으로 명확히 정하여 열거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법 조항에 ‘기상여건등에서 장시간 작업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하위법령과의 정합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기상여건등’, ‘장시간’의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 특별교육 대상 작업의 범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상 작업에 종사하기 전 한번 교육하는 특별교육의 특성상 기상여건 등 계절적 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교육하기 어렵고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바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현황에 맞추어 반기별로 진행하는 정기교육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며, 현행 법령에서 이미 정기교육 내용에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에 사항’과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기에 개정안은 재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545